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eas.or.kr) / 발행인 고전 / 편집인 홍창남 / 편집팀 이호준, 장우천, 김용준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30년의 회고

송기창 | 숙명여대/교육학부 교수

I. 서론

「교육법」에서 지방교육자치 관련 조항을 따로 떼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년을 지방교육자치 30년이라고 하나, 엄밀하게 본다면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 제1공화국에서 시작된 제1기 지방교육자치제가 1961년 5월 폐지되었다가 1964년부터 다시 시작된 제2기 지방교육자치제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991년 이후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64년의 지방교육자치제보다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더 근접한 제도라는 점에서 제3기 지방교육자치제라고 구분할 만하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제1기 지방교육자치제(1952-1961)는 다층적 교육위원회(독립형 의결기구였던 교육구교육위원회, 합의제 집행기구였던 특별시·시교육위원회, 심의기구였던 도교육위원회, 자문기구였던 중앙교육위원회) 시기였고, 제2기 지방교육자치제(1964-1991)는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 시기였으며, 제3기 지방교육자치제(1991-2014)는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 시기였고, 현재의 제4기 지방교육자치제(2014-현재)는 시·도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제1기는 지방의회 선출 시기(1952-1961), 제2기는 지방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문교부 선출 시기(1964-1991), 제3기는 지방의회 선출 시기(1991-1997), 제4기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선출시기(1998-2006), 제4기는 주민직접선거에 의한 선출 시기(2007-2014, 실제로는 2010년 교육의원 선거만 해당)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감 선출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제1기는 임명제 교육감 시기(1952-1961, 1964-1991), 제2기는 교육위원회 선출 시기(1991-1997), 제3기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선출시기(1998-2006), 제4기는 주민직접선거에 의한 선출 시기(2007-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1991년 이후 교육위원회 위상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화가 극심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후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은 1988년 개정 「교육법」에 근거하였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88년 개정 「교육법」은 당시 교육계를 대표하던 대한교육연합회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에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교육장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특수성을 살려 지역여건에 알맞은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되, 조례안·예산안 등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이원적 의사결정체계를 갖도록 하였다(송기창, 2019: 12).

반면,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를 시·도단위와 시·군·구단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시·도단위에서만 실시하기로 하였고,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로 하였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기본재산·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집행기관 명칭을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환원하였으며,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장을 두도록 했던 것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일반직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도 부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 「교육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은 시행일(1988.5.1.)로부터 1년 이내에 시·군·자치구의회를 구성하고, 시·군·자치구의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도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지방선거법」을 제정한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8년 개정 「교육법」은 당해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최초의 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교육위원과 교육장 선출도 불가능하였다.

III.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태생적 한계

1988년 「교육법」 제15조(교육위원회의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 및 자치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38조(교육장)는 “①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둔다. ②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교육장은 집행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 제5절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신설하고 제112

조에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1988년 개정 「교육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시행 중인 「교육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88년 개정 「교육법」이 시행되면, 즉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문제가 될 조항이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2조 또한 개정했어야 하나, 그러질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규정하였지만,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인 교육감만 인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에서 1988년 개정 「교육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개정 「지방자치법」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 교육계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만, 일반행정학자 중에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근거로 교육위원회도 집행기관의 일부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 이기우(2001: 69)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본 조항(지방교육자치법) 제8조 제1항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말함. 필자 주)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이며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에 속한다.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 중에서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집행기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집행기관이 ‘의사결정’(意思決定)하는 것과 의결기관이 ‘의결’(議決)하는 것을 혼동한 결과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송기창, 2004: 13-14),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연장선상에서 일반 행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였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2007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121조로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 그대로다. 교육계에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던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의 치명적인 태생적 한계로 작용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 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1990년까지 합의제 집행기구였던 교육위원회 관장사무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위임형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집행기구인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나뉘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배태하는 원인이 되었다.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교육위원회의 기능 중에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두 가지가 추가되었고, 「지방자치법」 준용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법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종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18개 관장사무 중 시·도의회에 제출할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 뿐이었고, 나머지 17개 사무는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전담 처리했으나, 1988년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안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등도 시·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2000년 1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의회에 제출할 사항에 ‘기채안(起債案)’도 추가되었다(송기창, 2019: 16).

종전에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등을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점도 달라졌다. 종전에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던 사항이 위임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 관장사항으로 분리되었다가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자 다시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 관장사항으로 통합되었다. 1991년 6월 이전에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전문가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감이 집행하던 사무를 2014년 7월부터는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어 교육감은 전문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바뀌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송기창, 2019: 16-17).

IV. 결론

교육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을 규정했듯이, 자치분권위원회(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의 동의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2항과 제4항에 “②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과 제4항으로 변경되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침이 법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교육자치의 근거인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형해화(形骸化)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 하는 법조항이었지만, 교육계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특별법에 대하여 사후적인 헌법소원조차 제기한 바 없었다.

지방의회와의 연계에 대한 집착한 나머지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패하였고, 교육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과 주민대표성에 대한 오해로 전문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절반까지 교육 및 교육행정 비경력자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위원간 결속력이 약화되어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무늬만 의결기관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 행세를 하는 이중의 결 과정에서 행정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교육위원회 개편 및 폐지를 가속화 시켰다.

지방교육자치는 본질상 주민 대표성보다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주민 대표성을 표방하다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교육의원제를 도입했으나 주민대표성이 국회의원보다 크고 시·도의회에 비해 심의분야가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교육의원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주민 대표성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교육감의 정치화 경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던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사항과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나누었다가 위임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폐지된 후, 교육위원회 사무가 종전의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로 이전되는 대신에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통합되자 교육감은 전문가 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바뀌어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위임형 의결기관이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바꾸는 실험은 실패하였다.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는 독자적인 의결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도의회가 하청을 준 사항에 대해서 의결기관 행세를 했지만, 시·도의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원청업체가 의결권을 회수하자(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하청업체는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었고, 원청업체에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었다. 독자적인 집행기능을 가졌던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에 비해 의결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모양은 그럴 듯했으나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명칭은 달랐지만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있던 시기에도 시·도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옥상옥으로 있었던 기관이므로 더 이상 교육자치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교육경력 없이 정당 배경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인 교육의 자주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은 종전의 전문가 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면 종전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가 부활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유지되는 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안주해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육계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 시론 |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자치의 의미 -

김진경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작년 인천 교육청에서 하는 포럼에 갔었다. 현장실천 사례를 온라인으로 발표하는데 일종의 지역사회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교육 사업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도 하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한 감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85년 학교교육을 비판하는 무크지를 냈다가 필화사건으로 1년 실형을 살고 15년 간 해직교사로 살게 되었는데 지역사회교육은 그 무크지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무크지의 표지 날개에는 지역사회교과서를 개발하면 책으로 내주겠다는 광고도 냈었다. 그 당연한 주장이 안기부 건물 지하에서 1주일 취조를 받는 동안 반미 반제국주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것으로 둔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떤 인류학자가 뉴기니아 밀림에서 수렵채취생활을 하는 원주민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 원주민 종족은 일정한 거주지를 가지지 않고 유목민처럼 밀림을 이동해 다니며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 종족의 특이한 점은 그렇게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몹시 불편할 것 같은데도 늘 거대한 나무기둥을 들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그 인류학자는 기이하게 여겨 그 기둥이 이 원주민 종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했다. 인류학자의 결론은 그 기둥이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원주민들은 이동해 다니며 만드는 숙소 가운데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며 우리가 이 성스러운 우주의 중심에 거주하는 자로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여 세계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인류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그 기둥이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절대적 의미를 갖는가를 실감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이 원주민들은 밀림에서 전원이 빈사 상태에서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 들고 다니던 나무기둥이 부러졌기 때문이었다. 나무기둥이 부러진 것은 우주가 붕괴되고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여 의미화한 세계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은 것이다 하며 전 종족원이 땅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위의 뉴기니아 원주민 이야기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자가가 거주하는 곳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여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성에 있다. 나는 교육과정 총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창조적 인간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실소를 머금는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구조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본질을 억압해 왔다.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에 있고, 내가 거주하는 곳은 변방의 변방의 변방이니 학교교육에서 성공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도시로, 서울로,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로 세계의 중심을 향해 떠나라고 반세기 넘게 전력을 다해 가르쳐왔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라고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지향으로 강조해 온지 이미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는 현상도 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학교교육이 전력을 다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향하는 인간상이 창조적 인간이라니? 이진 아마도 농담이겠지 싶다.

권한을 아래로 내리는 제도적 자치의 진전은 지난 30년 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가 아이들을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여 자기가 살아갈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자치의 내용적 진전은 깊은 자기성찰 없이는 진전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결단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다. 오늘날까지도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중앙집권의 하향식 교육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원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각 지역 마을마다 일제가 물려난 교육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립학교 설립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었다고 한다. 이 흐름이 지속되어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체제가 수립되었다면 주민의 교육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의 교육체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이 민립학교 설립은 금지되고 중앙집권의 하향식 교육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을 실질적 교육의 주권자로 세우는 자치의 내용적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 시론 |

지방교육자치 30주년에 즈음하여 -교육자치의 구성원칙 관련 생점을 중심으로-

곽 노 현 | 전 서울시교육감

금년은 시도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다. 5.16쿠데타로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통일 이후로 미뤘다. 1987년 헌법전면개정 당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1991년, 드디어 30년 만에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치러져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교육자치는 이때 교육위원회 간선 교육감과 교육경력자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 기둥 삼아 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선 교육자치 근거조항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조항을 꼽는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로 이원화하여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서 분리, 독자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된다. 이어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은 교육자치의 주체들에게 교육계 경력을 요구한다고 해석되며 교육의 정치중립성 보장은 교육자치의 주체들에게 무당적성을 요구한다고 해석된다. 교육의 정치중립성 보장은 선거권을 제외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한다고 해석돼왔다.

교육자치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에 토대를 둔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의 제도적 모습이 특정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치의 집행기구인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할지, 선출직으로 할지, 교육감을 통제할 입법기관을 교육경력자 교육위원회로 할지, 일반 시도의회로 할지 헌법은 아무 말이 없다. 지난30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교육감 선임방식은 교육위원회 간선제에서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다시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 입법기관도 교육경력자로 구성된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경력자 교육의원+일반 시의원 혼합형 시도의회교육상임위로, 다시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시도의회교육상임위로 바뀌었다.

나는 현재의 주민직선 교육감과 주민직선 시도의회 조합이 최선의 교육자치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집행기관뿐 아니라 입법기관도 독자적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동일한 입법기관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지금의 교육자치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의 관점에서 반쪽 교육자치를 면하기 어렵다.

행정자치와 준별되는 교육자치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지어 교육감직선제가 여러차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보기보다 평온하지 못하다. 첫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독자적인 교육자치를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서 비효율을 없애자는 것이다. 둘째, 여전히 교육감직선제를 흔들어대는 세력이 작지 않다. 이들은 제한직선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부르짖는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일원화론, 제한선거제,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주장과 제안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미군정시절부터 행정자치와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들어오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적으로 운영돼왔다. 해방직후 미군정이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이식해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시도단위의 합의제행정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그 수장인 교육감에게 부여한 결과다. 중앙정부(교육부)는 시도 교육위와 교육감의 상급기관으로서 일정한 개입, 감독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유초중등교육에 개입할 권한이 전무했다. 유초중등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도교육감이라는 독립직책의 업무였다. 다만 시도교육감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기 전까지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교육위의 장으로서 대통령임명직이었다. 시도교육감은 1991년 교육위원 간선제로 시작해서 학운위원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바뀐다.

1956년에 첫 구성된 지방의회는 5.16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으나 1991년에 부활하여 금년 7월이면 일제히 30주년을 맞이한다.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교육자치에도 몇 가지 변화가 동반된다. 첫째, 합의제집행기관의 장이었던 교육감이 독임제 기관으로 바뀌고 이에 맞춰 시도교육위의 성격과 역할도 합의제집행기구에서 사실상 시도의회교육상임위로 바뀐다. 둘째, 시도교육위는 교육경력자 가운데서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선출된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셋째,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위원이 선임한다. 넷째, 시도의회에는 교육상임위를 두지 않고 그 권한과 기능을 교육계출신 교육위원회가 대신한다. 다섯째, 시도교육감의 입법안이나 예산안 등 주요사안은 시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시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한다. 이로써 시도교육감도 시도지사과 똑같이 시도의회의 최종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됐다.

입법기관이 독자적 교육위원회에서 공통의 시도의회로 변하다

지방의회 부활과 동시에 주민직선제가 도입됐던 시도지사과 달리 시도교육감은 처음에는 교육위원 간선제로 시작해서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가 적용된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을 구성했던 교육위원회 구성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6년 지방선거 때까지 교육위원은 교육계경력자 요구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뽑혔다. 2006년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할 때 교육위원은 어떻게 할지 논쟁이 붙었다. 교육감을 직선하는 이상 교육위원도 직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제에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대체하고 교육위원을 따로 뽑지 말자는 주장이 대립했으나 후자의 주장이 승리했다. 주민직선 시도의원들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구성해서 직선 교육감을 견제하고 교육경력자로 구성된 시도교육위원회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

다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딱 한번만 교육경력자 교육의원 8인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이들과 7인의 시도의원이 함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를 운영하도록 4년의 일물 과도기를 뒀다. 2014년 임기종료일이 다가오자 전국의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제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0년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직선으로 등장한 6인의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의원제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결국 2010년 교육위원회제도에 이어 교육의원제도도 2014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학운위원 간선 교육위원이건 주민직선 교육의원이건 교육계 경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사출신 교육경력자는 교육전문성과 교직자부심에서 남다르다. 교육입법과 교육정책, 교육예산과 행정감독을 교육위원이나 교육의원이 책임지는 경우 문제의 핵심을 짚는 게 가능했다. 단점이 있다면 교사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교육감을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꿀 때 교육위

원도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면 됐다. 그랬더라면 전문성과 정당성이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었다.

교육경력자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이유

하지만 이런 대안은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이유가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교육위원은 교육청 고위간부나 학교장 출신의 60대 기득권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원은 선거 90일전까지 미리 사직해야만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교사의 피선거권 행사는 사실상 금지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60대 중반에 들어선 정년퇴임 교장출신이 교육위원을 독점하게 된 이유다. 교육운동진영에서는 교사의 출마금지조항을 개정해서 교육위원회에 젊은 피를 수혈할 생각을 하는 대신 교육위원회제도 자체를 ‘그들만의 리그’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풍토가 생겼다. 대학교수출신이 아닌 진보교육감들은 모두 교육위원 출신이지만 보수적인 교장출신 동료교육위원들에 치였던 쓰라린 경험 탓에 교육위원회제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에 교육위원이나 교육의원은 눈엣가시였다. 무당적 교육경력자 교육위원이나 교육의원은 자신들과 다른 경로로 선출되는 이질적인 선출직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교육관련 권한을 뺏아가는 제로섬관계의 선출직이었다. 더욱이 교육위원이나 교육의원의 지역구가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광역인 점도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중 교육위원제나 교육의원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요컨대, 교육위원제와 교육의원제는 각각 2010년과 2014년 옹호세력이 없는 가운데 별다른 반대나 저항 없이 폐지운명을 맞는다. 이로써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헌법의 요청에 더 잡아 교육경력자로 전부 또는 일부가 구성된 교육전문입법기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교육경력을 요구받지 않는 일반 시도의회가 교육입법과 교육예산, 교육정책의 전면에 나서는 반쪽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다. 제주도에는 아직도 교육의원제가 남아있어서 주민직선 교육경력자 교육의원 5인이 도의원 4인과 함께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예산, 법령을 뒷받침하고 견제, 감독하는 역할은 2014년 이래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교육경력이 없는 시도의원들이 100% 담당한다. 이렇게 볼 때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집행기관(시도지사과 교육감) 차원에서는 완전히 분리되고 있으나 입법기관(시도의회) 차원에서는 2014년부터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선거제와 러닝메이트제?

2007년부터 교육감직선제를 해본 결과 진보교육감의 득세가 분명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수진영이 내놓은 교육지책이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취한다. 하나는 학부모와 교원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제한직선제다. 그러나 공교육은 모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지금의 학부모와 교원이 낸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교육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학부모와 교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민이 공교육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갖는 게 이치에 맞다.

다른 하나는 러닝메이트제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소지를 원천 봉쇄하고 긴밀한 협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견 장점이 있다.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시도지사를 차지하는 지역

에선 교육감도 당달아 떨어오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첫째,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한다. 몇 가지 세부사항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감의 당적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만약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 후보와 당적이 없는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돼 한 몸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운동과정은 물론 당선 후 활동과정에서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당파성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에도, 당적이 없고 공식 러닝메이트가 아니었던 관계로 시도지사나 그 배후 정당에 대해 몹시 당당할 수 있었다.

더욱이 러닝메이트 제도 아래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택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러닝메이트 교육감은 독자직선 교육감에 비해 시도지사와 소속정당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러닝메이트 교육감은 지금의 독자직선 교육감보다 시도지사의 당파적인 요구에 따라야 할 경우,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타협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이 러닝메이트 제도에 부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

또 하나의 반대이유로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민의왜곡 효과를 들 수 있다. 2010년과 2014년의 서울교육감 선거결과가 좋은 보기다. 두 번의 동시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가 거둔 득표율은 유사성향의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 10% 포인트도 넘게 낮았다. 이는 시장과 교육감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유권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교육감 선택기준과 시장 선택기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요청과 교육에 대한 현실적 욕구를 감안할 때 얼마든지 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할 수도 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다. 러닝메이트 제도 아래서는 득표나 실패 원인을 시장과 교육감 중 어느 1인에게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러닝메이트 제도 아래서는 독립직선제와 달리 매력소재와 책임소재가 흐려진다. 직선제의 장점은 유권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러닝메이트 제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2006년12월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자치가 주민자치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별개기관이었다. 대통령임명직 시절에도 인사와 조직, 재정 등 모든 면에서 교육감은 시도지사에 대해 철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했다. 양자 모두가 선출직으로 바뀌고 나서도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공식적 연계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도지사 후보의 당적보유에 따른 당파성의 전염 우려로 말미암아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철저하게 경계의 대상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러한 경계를 풀어야 할 어떠한 특단의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요컨대,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육감의 독립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일원론? 이원론의 급진화를 향하여

교육감직선제를 바꾸는 걸 넘어 교육자치를 행정자치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주로 광역단체장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 유럽에선 교육감이 별도로 없고 시장(지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부시장(교육부지사)가 교육을 관할하는 걸 봐도 일원화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원화의 결과로 양자가 협력할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활한 협력은 일원화를 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협력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일원화를 할 경우 시장권한이 더 확대돼 집중이 일어나는바, 이는 분권화뿐 아니라 교

육의 자주성에 역행하는 게 틀림없다.

교육감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말자는 제안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시도의원들이 교육입법과 예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엔 커다란 한계가 있다. 고작 3,40년 전의 학생경험이나 1,20년 전의 학부모경험으로 교육문제를 다루서는 제대로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도의원 중에는 교육전문가=교사출신을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의 피선거권=공직출마 금지를 풀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지고지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세 가지만 지적하자면, 첫째, 교육자치는 시군구 단위에서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자치는 삶의 현장에서 가까울수록 또한 동질적 요소가 강할수록 더 빛이 난다. 시민참여와 책임추궁이 쉽고 관료제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시군구 단위라면 충분히 주민직선 교육자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총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처럼 교육감뿐 아니라 교육장도 직선하는 게 좋다. 둘째, 지금처럼 집행부(교육감)만 독립하고 입법부(시도의회)를 같이 쓰는 교육자치는 반쪽 교육자치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직선교육감뿐 아니라 교육경력 직선교육의회까지 운영되는 온전한 교육자치로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교육경력자로 구성된 교육전문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의원직 출마와 선거운동, 그리고 당선 후 휴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 2021년 학회주요소식 •

1. 학술지 발행

「교육행정학연구학술지」 발행 일정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 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 · 호		심사비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39권	1 호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4월 30일
	2 호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6월 30일
	3 호	2021년 06월 30일	2021년 08월 31일
	4 호	2021년 08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5 호	2021년 10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문의: 김범주 편집간사(010-8593-8900 / keas1967@nate.com)

「교육행정학연구」 논문투고 및 인용 활성화 요청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되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꾸준히 교육행정 전반의 깊이 있는 연구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와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율과 인용지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KCI 논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 KCI 인용지수는 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간의 인용된 횟수만을 가지고 산출된 지수으로써, 해외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논문의 저자가 피인용문헌을 기재할 때,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권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KCI 인용지수 산출시 누락될 수 있음.

2. 회비 납부 안내

회원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회비 납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상시 수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회비
이사 임원회원 이사회비	100,000 원
일반 정회원 연회비 (※ 정년퇴직한 비이사회원은 면제)	50,000 원
학생(전일제) 회원 연회비 (※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정함)	30,000 원
기관회원 연회비	100,000 원
신규회원 입회비(※ 개인 및 기관 회원 공통)	10,000 원

※ 2021년부터 정회원비 3~5회분 선납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3. 회원 소식

1) 고전 학회장, 제주대학교 부총장 겸 교육대학장으로 취임



우리 학회의 학회장이신 제주대학교 고전 회장님께서 3월 1일자로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부총장 및 교육대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 한국교육개발원 박희진 연구위원, 계명대학교 교수로 임용



우리 학회의 미래학교연구위원회 회원이신 한국교육개발원의 박희진 박사님께서 3월 2일자로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3)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심현기 전임연구원, 미국 교육학회(AERA) Fiscal Issues, Policy and Education Finance SIG Outstanding Dissertation 수상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심현기 전임연구원은 지난 4월 9일(금)자로 미국 교육학회(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ERA) 연례학술대회에서 Fiscal Issues, Policy and Education Finance 전문분과회(Special Interest Group, SIG) Outstanding Dissertation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4) 미국 위스콘신대학 양민석 회원(교육정책전공 박사과정), 9월부터 미국 West Texas A&M University의 교육학과 조교수 임용 예정



우리 학회의 회원이신 양민석 선생님께서 올해 9월자로 미국 West Texas A&M University의 교육학과 조교수 임용 예정이십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4. 회원 신간 안내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 딜레마 상황과 정책 대응

임연기 저(공주대 명예교수) | 학지사 | 2021년 2월 25일 출간



딜레마 이론의 시각에서 농촌학교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이다. 우리나라 농촌학교 정책은 작은학교의 '통폐합'과 '보전·육성'이라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인지적 한계나 정보의 부족보다는 대안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들을 서로 맞교환하기 힘들어 양자택일의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보았다.

일상에서 접하는 딜레마 사태에서 시작하여 딜레마의 관점을 폭넓게 고찰하였다. 시론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농촌학교의 딜레마 발생배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농촌학교 정책의 딜레마적 대응, 농촌학교의 보호된 가치와 공리적 가치, 작은학교 탈 딜레마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저술편찬지원을 받아 그간의 농촌연구 결과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5. 정책연구 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올해 5월까지 5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님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간접비)	발주기관
2021년 미래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리포트	김두정(충남대)	2021.02.19. ~ 2021.04.30.	3,000,000원 (300,000원)	국가교육회의
제주미래교육 비전 수립 연구 용역	김성기(협성대)	2021.02.19. ~ 2021.04.30.	45,454,545원 (2,733,545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대학원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박수정(충남대)	2021.04.16. ~ 2021.07.14.	19,800,000원 (1,000,000원)	경기도교육청
대전외국어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박수정(충남대)	2021.04.20. ~ 2021.10.19.	17,454,000원 (1,000,000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백선희(경인교대)	2021.06. ~ 2021.09.	20,000,000원 (1,200,000원)	교육부(APEC IACE)

6. 한국연구재단 2021 학술대회 지원 예비선정(6월 3일 지원 확정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2021년 학술대회 지원사업 평가에서 예비선정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사업 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학술위원회(위원장: 박상완 교수)의 주도로 올해 말 예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1 학술대회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예비선정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의 선정률은 26.5% 였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 금액은 980만원으로 최종 지원금액은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사업 준비에 힘써 주신 학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 이용 안내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회원님들께서 편리하게 학회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무용품 비치, 와이파이가 설치, 학회 출간물 정리, 커피/차 구비 등 대대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분과 위원회 활동, 정책연구과제 추진 등과 같이 학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회 사무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사용하기 전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 마스터즈 타워 빌딩), 9층 902호

※ 이용 문의: 총무부간사 김용준(010-2430-1532 / keas1967@daum.net)

8. 학회 행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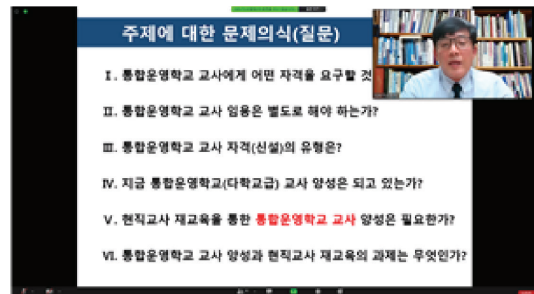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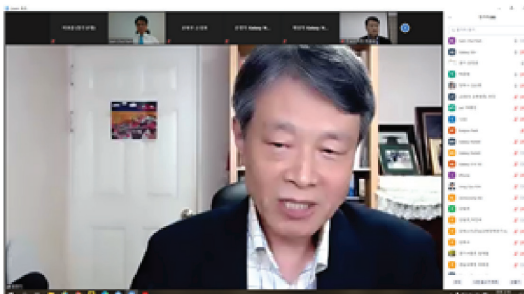
1) 2021년 제 1차 이사회 개최

- 가. 일시: 2021년 1월 29일 (금) 오후 2시
- 나. 장소: 학회 사무실 및 ZOOM 회의실
- 다. 참석: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사무국 담당자 등
- 라. 안건: 2021년도 49대 임원 및 위원회 소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2) 2021년 한국교육행정학회·공주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공동 주최 포럼 개최

- 가. 주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향과 과제
- 나. 일시: 2021년 5월 26일 (수) 오후 2시
- 다. 장소: ZOOM 가상 회의실 활용
- 라.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공주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마. 참석자: 학회 관계자, 교수 및 연구원,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교원 등 100 여명



3) 2021년 춘계 학술대회(4개 학회 연합학술대회 운영)

- 가. 주제: 지방교육자치제의 회고와 전망
 나. 일시: 2021년 5월 29일 (토) 오전 9시 30분
 다. 운영: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학술대회
 라. 프로그램

구분	제목	발표자	토론자
공동주제 발표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회고와 전망	송기창(숙명여대)	자유토론
자율주제 발표	지방 수준 교육 분권: 지방의 교육분권과 거버넌스 현황과 전망	박수정(충남대)	장덕호(상명대)
	학교 수준 교육 분권: 법·제도 운영의 실제와 과제	이경호(고려대)	김민조(청주교대)



4) 향후 학술대회 개최

- 2021년 하계 학술대회(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 세션 운영)
 가. 주제: 한국교육 진단, 미래 교육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이슈와 과제
 나.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 26일(토)
 다.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및 교육관
 라. 프로그램(안): 12개 세션, 37개 발표 예정
- 2021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가. 주제: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
 나. 일시(안): 2021년 11월 27일 (토) 예정
 다. 장소(안): 제주대학교 예정

9. 2021년 회비납부 명단(2021년 5월 말 기준)

1) 2020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5명)

김은정, 김효정, 이한나, 정설미, 정희욱

2) 2020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4명)

구성우,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3) 2021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47명)

강소윤, 강신철, 고미옥, 구미례, 권영성, 김경희, 김범주, 김보경, 김새론, 이성아, 김영옥, 김용준, 류지은, 민병성, 민자원, 박동찬, 박시진, 박종열, 박현석, 배진희, 손다운, 손판이, 신원규, 안성률, 안지혜, 은수진, 이성희, 이수지, 이승연, 이영선, 이원재, 이유경, 이태화, 임혜진, 장석우, 장우천, 전주현, 정수영, 정재민, 조선미, 조은주, 지혜영, 진형정, 최지혜, 한지예, 황영식

4) 2021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90명)

장민수, 강은숙, 권순형, 권초아, 김나영, 김도기, 김민규, 김상규, 김성열, 김성천, 김영식, 김정아, 김종규,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현진, 김혜진, 김훈호, 김희성, 문찬주, 민윤경, 박균열, 박삼철, 박세준, 박세진, 박영림, 박유민, 박정인, 박준현, 박태양, 박호근, 백승주, 서시연, 석재현, 선애경, 손성욱, 송경오, 송진주, 송효준, 신봉섭, 신재영, 신하균, 신현석, 안영은, 양윤정, 윤기현, 윤예지, 윤정, 윤혜원, 윤혜원, 이기용, 이미희, 이민규, 이수정, 이승호, 이승희, 이영선, 이예슬, 이원재, 이은혜, 이인수, 이재선, 이주희, 이진권, 이창수, 이호준, 임수진, 임희진, 장민정, 전수경, 정유리, 정은하, 정현주, 조미애, 조영하, 주휘정, 차지철, 채송화, 채윤정, 최예슬, 최원성, 하동엽, 한은정, 허주, 홍미영, 홍지오, 황선필, 황윤환, 황재운

5)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2명)

윤정일, 고전

6)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37명)

김민조, 김민희, 김병주, 김병찬, 김왕준, 김용, 김이경, 김정희, 나민주, 박경호, 박상완, 박소영, 박수정, 박영숙, 박주형, 송기창, 신재홍, 엄문영, 엄준용, 오범호, 유길한, 이길재, 이석열, 이쌍철, 이인희, 이재덕, 임수진, 장덕호, 전제상, 정동욱, 정성수, 정제영, 주현준, 차성현, 하봉운, 허병기, 황준성

7) 2020년도 기관회원 납부(6)

경기도교육연구원, 남서울대학교도서관,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담당: 김용준 부간사(010-2430-1532, keas1967@daum.net)

10. 제 49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고전(제주대)
- 부 회 장 : 박선행(동국대)
- 감 사 :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2명

김영식, 신극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전, 박선행

• 선임직 이사 64명

고장완(성균관대) 김규태(계명대) 김달호(동아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민조(청주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성기(협성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용(한국교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이경(중앙대) 김정희(대교협)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경호(KEDI) 박대권(명지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수정(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형(경인교대) 배상훈(성균관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신정철(서울대) 신재흡(한성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엄문영(서울대) 엄준용(중부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수정(단국대) 이승호(KEDI) 이쌍철(KEDI) 이인희(제주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이정미(충북대) 이필남(홍익대) 임수진(광주여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정동욱(서울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최정윤(KEDI) 하봉운(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홍창남(부산대) 황준성(KEDI)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홍창남 (부산대)	이쌍철 (KEDI)	김용(한국교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한나(충신대)
			김혜영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안선희(중부대)	이덕난 (국회입법 조사처)
			이동엽(KEDI)	한은정(인천대)	
학술위원회	박상완 (부산교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훈호(공주대)	변수연(부산외대)
			박소영(숙명여대)	이경호(고려대)	이길재(충북대)
			이인희(제주대)	이희숙(강남대)	
학회지 편집위원회	김왕준 (경인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혜진(KEDI)	박수정(충남대)	박종필(전주교대)
			송경오(조선대)	양성관(건국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장덕호(상명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성수(대구교대)
			함승환(한양대)	허주(KEDI)	
조직규정 위원회	김용 (한국교원대)	이덕난 (입법조사처)	고장완(성균관대)	김순남(신한대)	박대권(명지대)
			서재영(KEDI)	엄준용(중부대)	임수진(광주여대)
			전수빈(동국대)	주영효(경상대)	
재정기금 위원회	백정하 (대교협)	이석열 (남서울대)	서지영(대교협)	송효준(KEDI)	신동훈 (청소년정책연구원)
			신봉섭(나사렛대)	신재흠(한성대)	이수정(단국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포럼운영 위원회	황준성(KEDI)	신경석 (평생교육원)	강호수(경북대)	김성기(협성대)	김종규(연세대)
			박효원(KEDI)	배영직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신정철(서울대)
			유경훈(KEDI)		
국제학술 위원회	정동욱 (서울대)	이필남 (홍익대)	김용(한국교원대)	김현준(미네소타대)	민윤경(KEDI)
			박주호(한양대)	변수용 (펜실베이니아대)	이전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수연(큐슈여대)		
학술편찬 위원회	김병주 (영남대)	차성현 (전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용(한국교원대)	김이경(중앙대)
			박수정(충남대)	배상훈(성균관대)	변기용(고려대)
			윤홍주(춘천교대)	이병식(연세대)	정제영(이화여대)
정책연구 위원회	장덕호 (상명대)	김규태 (계명대)	김용기(경기도청)	박경호(KEDI)	박인심(서울여대)
			이승호(KEDI)	이정미(충북대)	차지철(동명대)
			최정운(KEDI)		
연구방법론 위원회	송경오 (조선대)	신철균 (강원대)	김병찬(경희대)	박선형(동국대)	변기용(고려대)
			변수연(부산외대)	이성희(KEDI)	정바울(서울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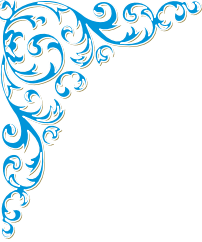
■ 분과위원회 구성

미래학교 연구위원회	정제영 (이화여대)	박주형 (경인교대)	남미영(서울강솔초)	노정서(신남중)	박준현(대구장기초)
			박희진(계명대)	선미숙 (미래교육연구소)	이기용(안동대)
			이남경 (광운전자공고)	장혜원(KAIST)	정예화 (미래교육연구소)
			최정원(만월중)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엄문영 (서울대)	이승호 (KEDI)	김영식(경남대)	김훈호(공주대)	오범호(서울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임소현(KEDI)	최원석(경인교대)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김이경 (중앙대)	이인희 (제주대)	김기수 (경기교육연구원)	김달효(동아대)	남수경(강원대)
			박삼철(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정수현(서울교대)
			채재은(가천대)		
윤리위원회	임연기 (공주대 명예)	김정희 (대교협)	김홍주(세명대)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노종희(한양대 명예)	박영숙(KEDI 석좌)	서정화(홍익대 명예)
			이차영(한서대)	최준렬(공주대)	
소식논문상 위원회	주삼환 (충남대 명예)	서정화 (홍익대 명예)	강인수(수원대 석좌)	김혜숙(연세대)	노종희(한양대 명예)
			박세훈(전북대)	신중식(국민대 명예)	이종재 (서울예대법인 이사장)
			임연기(공주대 명예)		
주삼환 리더십상 위원회	김성렬 (경상대)	한유경 (이화여대)	김이경(중앙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영숙(KEDI 석좌)
			신봉섭(나사렛대)	신재흡(한성대)	신현석(고려대)
			주철안(부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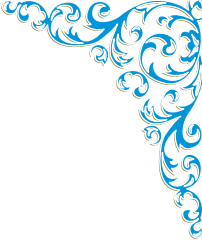
11. 제 49대 사무국 소개

제 49대 사무국이 새롭게 구성되어 2021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eas.or.kr E-Mail: keas1967@dam.net
학회	주소	(0417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eduforall0116@gmail.com)
간사	성명	총무간사: 장우천(충북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keas1967@daum.net , 010-7522-8217
		총무부간사: 김용준(충북대학교)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 -keas1967@daum.net , 010-2430-1532
		편집간사: 김범주(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keas1967@nate.com , 010-8593-8900
		편집부간사: 김보경(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keas1967@nate.com , 010-5573-8661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